

2024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소방시설관리업 점검 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방시설 자체점검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1.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점검자 등급별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① 노임단가(원)	② 직접경비 (①×10%)	③ 제경비 (①×115%)	④ 기술료 [(①+③)×30%]	합계(원)
관리사, 특급	340,360	34,036	391,414	219,532	985,342
고급	290,356	29,036	333,909	187,280	840,580
중급	239,233	23,923	275,118	154,305	692,579
초급	211,513	21,151	243,240	136,426	612,330

2.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가. 표준자체점검비 기준표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원 용도	1일 점검가능 면적(m ²) 및 세대수(아파트등)									
	3인(표준)		4인		5인		6인		7인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1류	8,333	10,000	10,833	12,916	13,333	15,833	15,833	18,750	18,333	21,666
2류	9,090	10,909	11,818	14,090	14,545	17,272	17,272	20,454	20,000	23,636
3류	10,000	12,000	13,000	15,500	16,000	19,000	19,000	22,500	22,000	26,000
4류	11,111	13,333	14,444	17,222	17,777	21,111	21,111	25,000	24,444	28,889
5류	12,500	15,000	16,250	19,375	20,000	23,750	23,750	28,125	27,500	32,500
세대수	300	350	370	440	440	530	510	620	580	710
금액(1일)	2,210,002	2,210,002	2,822,332	2,822,332	3,434,662	3,434,662	4,046,992	4,046,992	4,659,322	4,659,322

※ 상기 기준표는 3인(특급1, 초급2, 추가: 초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투입된 기술 인력의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1)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일 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① 5,000㎡ 미만은 30%, 5,000㎡ 이상 10,000㎡ 미만은 20% 범위 내에서 산출된 점검 수수료를 감할 수 있다. 단,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 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점검 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상주 점검

화재 또는 2차 재해의 위험성이 증시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등에서 상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로서, 순회 소방시설 상태 점검 및 간이 작동시험을 수행하는 일상점검, 화재, 비화재보에 대한 응급 대응조치, 감지기 교체 등 수시로 수행하는 경미한 정비 등을 포함하며, 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 시 아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 ①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며,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근 비상대기는 별도 정산한다.
- ② 상주 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초과로 하되 등급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 2명초과)초과로 하고,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text{상주점검 투입 인력수(명)} = \text{대상처의 연면적} / 50,000\text{㎡}$
--

나.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세대수 기준

- 1) 하루에 2개 이상 건축물 점검 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2)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3) 주상복합 아파트 수수료 산정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세대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

종합점검	(아파트세대수 × 33.3) + 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작동점검	(아파트세대수 × 34.3) + 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 4) 상기 1), 2), 3)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따른다.

다.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 1)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22. 12. 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3. 12. 6.)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적용한다.
- 2)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3)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한다.
 -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일자, 인원 등의 산정기준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 ③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④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 ⑤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 4)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 5) 일과시간(09:00~18:00)외 또는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0% 할증

한다. 단,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일과 시간 외에는 공휴일 수수료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적용한다.